

일본공증인연합회 방문 결과 보고서

(2007. 4. 19. ~ 21.)

안 원 모

대한공증협회 섭외이사
법무법인한길 변호사

1. 서언

오늘날 공증업무는 점차 국제화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가는 공증문서의 수량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공증업무의 본질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통일됨에 따라 간에 자국 공증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공증 선진국등 다른 나라 공증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되었다. 대한공증협회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수년전부터 일본공증인연합회 및 중국공증협회와 긴밀한 유대관계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국제공증협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 우리 공증제도의 원천이 된 나라로서 197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공증법은 일본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고 공증 운영 실무 역시 유사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양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여 오늘날에는 상당부분은 같고 상당부분은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제도 중에도 일본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생기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공증제도 및 운영실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학술적으로 연구·축적하여 공증법학을 하나의 법학 분과로 발전시켰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공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실현하는등 선진적인 공증제도의 운영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공증이나 선서인증제도의 도입을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유언공증제도 등 공증의 이용에 관한 인식확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를 먼저 채택,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면서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국제공증협회의 부회장 국가로서 국제공증협회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공증협회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한공증협회 집행부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협회는 예산상 극도로 절약하고 연 수입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비교할 때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단기간 내에 견학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본공증인연합회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상대방 협회의 의전이나 준비관계도 있고 예산상의 한계도 있어 이러한 방문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동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점차 우리 공증협회가 국제화되면서 회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시기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일본은 공증인의 자격이나 공증방법에 대한 규율이 매우 엄격하면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의 공증 선진 제도를 받아들여 법령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본공증인연합회는 1979년부터 국제공증협회에 가입하여 주요 국가가 되었으며 각종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관찰하고 있다.

대한공증협회도 종래의 공증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걸맞는 선진공증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공증인연합회를 친선 방문하고 공동세미나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증제도가 어떻게 정착, 발전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공증인들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여실히 볼 수 있었으며, 한국 공증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2. 일정 및 진행경과

일본공증인연합회에 방문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후 일본 측과 합의된 2007. 4. 19. 동경 소재 일본공증인연합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단은 조희중 협회장님, 최중현 부협회장님, 장재형 총무이사, 이주성 재무이사 그리고 섭외이사인 본인 등 5명이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한다는 원칙하에 여행사의 선정과 경비 면에서도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여러 분들이 노력하였다.

출발하기 전의 준비사항으로서 ① 협회장님 인사 말씀자료, ② 한일 공동 세미나 발표 자료, ③ 일본공증인연합회에 대한 단체 선물 및 임원들에 대한 개인 선물의 선정과 포장 등이 필요하였고, 여러 논의 끝에 연합회 단체 선물은 에밀레 종 모형으로, 임원 선물은 일본인들의 인기식품이라는 재래김으로 정하였다.

2007. 4. 19. 아침 10시 김포공항에 모여 동경 행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동경에 도착한 후 바로 호텔에 들러 가방을 맡긴 다음 오후 3시에 일본공증인연합회를 방문하였다. 호텔로 가는 도중 식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오래 걸려 점심도 못 먹고 바로 방문한 것이다.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위치는 동경도 청대전(치요다)구 가스미가제끼 1-4-2 대동생명 가스미가제끼빌딩 5층으로서 지하철 마루노우치선, 긴자선의 긴자역 C2, C3출구에서 도보로 2분 정도 걸린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동 빌딩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 정도로 보였다. 방 1칸을 세내어 사용하고 있는 대한공증협회

와는 무척 사정이 달라 보였다.

일본 측에서는 예의 그 치밀한 준비 태도를 잃지 않고(일본 공증인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임을 감안해주기 바란다) 좌석배치를 하고 명단, 이름표찰 등을 준비하였다.

이 자리에는 일본 측에서 일본공증인연합회 회장 카케히 야수오(寛康生), 海老原 良宗 상무이사, 사시키 히로아키 이사장, 이사인 다카하시 와타나베(渡部尚), 와타베 마스가즈(渡部正和), 카토 히데츠구(加藤英継) 부회장(판사 출신) 등이 참석하였다. 간단한 수인사 후 먼저 일본 측에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한 사항 즉, 일본의 최근 공증제도 현황, 전자공증제도, 선서인증제도, 유언공증의 활성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였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그 후 장재형 총무이사가 최근 한국 공증제도의 변화내용, 개선 추진 내역을 상세히 발표하였다.

일본어 통역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부득이 오오사카에서 평소 서울변호사회와 대판변호사회의 교류 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홍치영 씨에게 통역을 부탁하였다. 원래 통역이라는 것이 문화적 차이나 양국 언어의 정밀한 차이점을 모르면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것인데 홍치영씨는 오랜 경험을 기초로 능숙하게 통역하여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매우 원만하게 통역이 이루어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장재형 총무이사의 발표가 끝난 후 일본공증인연합회 카케히 회장이 직접 여러 자료를 보면서 최근 도입, 운영되고 있는 여러 신진 제도들에 대하여 매우 학구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너무나도 열띤 논의와 토론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일본의 공증제도가 최근 다양한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전자공증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운영실태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세미나 발표 후 우리 측은 미리 준비한 기념품(재래김과 모형 중)을 전달하였다. 양측 참석자 전원이 간단히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18:00경 이들이 예약한 저녁 장소로 이동하였다. 저녁 식사 장소는 바로 인근 건물 지하의 중식당 태남반점이었다.

일본인들은 술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날은 일본 공증인들이 먼저 술을 많이 마시고 분위기를 돋우는 바람에 매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특히 조희중 협회장님이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함에 따라 연령이 비슷한 일본공증인들이 더욱 친밀감을 느끼는 듯하였다. 국제화 시대에 아무리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도 그 나라 말을 구사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이 자리에는 오후의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공증인들도 3명 참석하여 양국의 문화와 역사, 공증제도, 법률제도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본 측의 따뜻하고 배려깊은 환대에 대하여 협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측 인원 전부는 큰 감명을 받았다. 만찬은 21:00경 종료하였고 우리는 21:30경 호텔로 돌아왔다.

다음 날인 2007. 4. 20. 아침 10:30경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안내로 동경시 중앙구 은좌 5-2-1 은좌동지빌딩(긴자 도시바빌딩) 7층에 위치한 긴자 공증사무소(恩座 公證役場)를 방문하여 전 날 만났던 야마모토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시연을 보면서 매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

곳 공증인사무소는 전체가 통하여진 사무실로서 출입구 부분에 직원들의 접수대를 비롯한 직원석이 있고 뒷부분에 4~5명의 공증인들이 서로 책상을 마주보며 집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공증인 별로 격리된 사무실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고관대작을 지낸 공증인들을 생각하면 다소 간소한 편이다. 은좌공증역장은 일본에서 가장 요지에 위치하고 수입이나 건수 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사무소라고 한다. 아마모또 공증인은 그 날 일부러 우리를 위하여 평소 자신의 의뢰인인 사법서사에게 부탁하여 법인 정관의 등기를 전자공증으로 촉탁하게 하여 전자공증 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시범으로 친절하게 보여주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전자공증 시연을 보고 상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본공증인연합회 집행부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인근 일식당으로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하고 일본 공증인 업계의 현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마침 그 자리에 일본공증인연합회의 국제위원회 홍고 다케요시(本江威憲) 위원이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한국의 국제공증협회 가입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우리가 2005년도에 이미 신청한 후 상당히 오래된 상태라고 하자, 자신이 다음 날 국제공증협회 일본측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다유키 후나바시(舟橋定之)를 만나도록 주선하겠다고 하였고, 다음 날인 2007. 4. 21. 국제공증협회 후나바시 부회장을 홍고 공증인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그 날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었다. 이들로부터 최근 국제공증협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들은 한국의 조속한 가입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들과 헤어진 후 바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여 귀국하여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쳤다.

3. 결론

매우 짧은 일정의 방문이었으나 변화, 발전하고자 하는 일본의 공증제도와 공증운영 현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공증현실에 대하여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공증제도와 선서인증제도 및 강제가입제도는 최근 법무부의 공증인법 개정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공증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공증인들도 자신의 직분에 상응한 연구와 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붙임 : 일본공증제도에 대하여 : 일본의 최근 공증제도 및 전자공증제도, 공증인 연합회의 조직과 지위등 주요 이유에 대하여 방문기간 중 최중현 부협회장님께서 상세한 메모를 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본 보고서에 첨부한다.

1. 일본공증인연합회 조직

일본공증인연합회(임의단체)와 지방공증인회(강제단체)로 조직됨. 공증인은 일본공증인연합회의 가입과 동시에 각 지방공증인회에도 가입함. 지방공증인회는 강제단체로서 전국적으로 47개 지방회가 설치되어 있고 동시에 12개 블럭(지역회)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음. 공증인은 전국연합회의 회원임과 동시에 지방회의 회원이 된다.

2. 일본공증인연합회

- (1) 1983년도에 설립하여 개인공증인 550명이 가입되어 있고, (동경시에만 108명) 47 지방공증인회가 가입되어 있음.
- (2) 연합회의 목적 : 공증업무발전, 업무개선, 공증인의 능력향상, 공증인 품위유지, 개인 공증인과 협회와의 업무연락.
- (3) 연합회의 조직 : 총회, 전국이사회, 집행부(회장, 부회장, 간사2명, 이사장, 상무이사 4명, 평이사 20명, 위원장 8명, 사무직원 8명)
- (4) 연 예산 : 1억 2,000만엔(전액 회원의 회비 징수로 충당)
- (5) 8개 위원회가 있음(법기, 기획, 홍보, 외무, 문례, 편집위, 전자공증, 제도)
- (6) 활동
 - ① 공증제도 보급발전, 홈페이지 활용
 - ② 법무성과 공동으로 매년 공증주간(10月)을 정하여 홍보활동
 - ③ 공증 전화상담
 - ④ 법무성과 연락, 업무조정
 - ⑤ 외국문서 인증검토, 회원의견 수렴
 - ⑥ 변호사, 변호사회와의 협력 관계
 - ⑦ 사법서사회 기타 유관단체와의 의견교환
 - ⑧ 공증인 연수 실시 - 공증인을 상대로 한 전문적 연수
 - ⑨ 기관지 “공증” 발행(1년 4회)
 - ⑩ 국제기관과의 유대관계, 세계동향 정보입수, 국제회의 참석

⑪ 전자공증 활성화

⑫ 각 공증사무소의 업무 활성화

- (7) 연수 : 신규 임명 공증인을 대상으로 함 - 3일간, 년 3회 나누어 실시, 현업 공증인이 실무 강의. 1년에 70명 신규임명 (법무성 고위직원, 검사로서 30년 이상 근무한 고령의 경력자가 대부분임). 일반 공증사무소 직원에 대하여도 교육 실시

3. 전자공증제도

현재 1년에 10만 건 정도 개인이 공증이용, 법무사를 통한 전자공증제도 활성화, 정관인증이 대부분 (전체 전자공증의 20%), 공증인 면전 내용 확인은 필수적으로 실시함.

(1) 절차

공증할 데이터(자료) →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법무성 홈페이지에 송부 → 법무성 → 중앙전자센터(히다치 사 내 설치) → 각 지정 공증사무실 전달 → 내용 검토(정관의 내용심사) → 신청인이 공증인과 미리 약속된 시간에 공증사무소로 방문 → 공증인의 면전 확인 → 공증문서 부여, 발부 → 본인이 서면으로 인증받음 → 경우에 따라 디스켓을 추가로 받기도 함 → 등기소에 제출하여 상업등기 완료 → 모두 전용선을 이용하고 각 공증인의 고유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해킹을 방지하고 있음.

(2) 장치 설계 - 법무성이 예산으로 지원.

- (3) 사용자에게 이득이 있어야 활성화 가능 : 일본의 경우 통상의 정관 공증시에는 4만엔의 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4. 기타

- (1) 선서인증 - 실제로 이용은 많지 않음. 허위 증언시 과태료(15만엔). 동경의 경우 2006년도에 532건 이용
- (2) 공증홍보사업 - 공증인 연합회 홈페이지에 현재까지 100만 건 이상 접속하였음. 매년 10.1부터 공증 홍보주간(법무성공동) 실시. 포스터 제작·배포함.
- (3) 유언공증 - 활용은 많으며 사후에 공증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거의 없음. 다투는 것은 1년간 유언공증 6만 건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5. 국제공증협회 가입 관련 내용

(1) 통상적인 가입 기준

공증인 업무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및 공증인의 정부에 의한 기속 여부가 중요.

공증인의 검업 현실 파악할 것.

공증서류의 작성과정 및 공증 서류의 진실성 검토가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 검토.

한국의 경우 독일과 유사한 제도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2) 절차

4인의 집행부 임원이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바, 한국이 속히 가입하려면 동 심사위원들을 초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나 경제력에 비추어 신속한 가입을 요망함.

심사받기 위한 경비는 각 국 공증인협회에서 부담하며 가입 후에는 공증인의 수, 각국의 경제력, 공증인의 수입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연간 회비를 내게 됨(한국은 1년에 5,000달러 ~ 7,000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됨) 